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871
----------	-----

발의연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이효상 외 9명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안 제4조)

다. 독서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운영과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며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안 제6조)

다. 독서의 날을 지정·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는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 수여(안 제7조)

라. 도서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안 제8조)

마.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근거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울산광역시중구 도서관 확충 계획
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관한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환경 조성)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

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북스타트운동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구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 진흥의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7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제출자 : 2011. 11. 14(월)·이효상 의원 외 9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1. 16(수)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1. 12. 1(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상의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나. 독서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운영과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며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

다. 독서의 날을 지정·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의 책 선정

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표창 및 도서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

마.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 등

5. 관련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운영, 독서의 날을 지정·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의 책 선정,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표창 및 도서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 하는 등

○ 현재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